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2015년 12월 30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민간운영자”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(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자원봉사자)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민간운영자가 제②항 및 제④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,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.

제11조제5항중 “동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고 “가입할 수 있다”를 “가입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중 “3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(이하 “구의원”이라 한다)은 고문의 정원과 관계없이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. 다만,

동장은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, 언론계, 문화·예술계, 관계, 경제계,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,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%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.

제17조제6항 중 “위원”을 “고문을 포함한 위원”으로 “즉시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여 같은 조 제7항으로 하며, 제17조제7항 중 “위원”을 “위원 및 고문”으로 “서대문구의회 의원”을 “구의원의”로 하여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.

제17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⑨ 제8항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는 위원 및 고문은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내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.

⑩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⑪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당연직 고문”을 “고문”으로 한다.

제20조 제목 “위촉 해지”를 “해촉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원”을 “위원 및 고문”으로 하며 “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”를 “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 다만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촉 해지”를 “해촉”으로 “위원”을 “위원 및 고문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5항 중 “당연직 고문”을 “고문”으로 한다

제23조 본문 중 “당연직 고문”을 “고문”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임기를 마친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이수에 대한 적용례) 제17조제9항 개정 규정의 교육이수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위촉 및 연임되는 위원과 고문부터 적용한다.